「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」

(법률 제64호)

제1조

이 법은 민간부문의 원유정제활동의 참여를 통한 이라크경제개발업무참여와 산업기반구축에 대한 기여를 장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

첫 번째: 민간부문은 원유정제소를 설립하고, 그 시설을 소유, 가동, 운영하고 시설에서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고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.

두 번째: 이 법에서 민간분야는 「1997년 제21차 회사법」에 따라 지정한 회사자본을 보유하고, 기술과 경험에 있어 원유정제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, 개별적으로 설립되거나 연합의 형태를 띄는 모든 이라크 또는 외국회사, 회사연합을 의미한다.

제3조

투자회사는 전 직원의 75%이상 이라크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.

제4조

정제소설립 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설립하여야 하며, 정제소 내 중유제품생산비율은 20%이하이어야 한다.

제5조

석유부는 석유부와 투자회사 간 평균시장가격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시설가동능력과 국제가격을 고려하여 원유정제소를 설립한다.

제6조

첫 번째-원유정제소는 가장 가까운 정제소로부터 운송관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인도지점을 지정한다.

두 번째-투자회사는 자체적 비용으로 이 조의 첫 번째 항에서 명시한 인도지점과 정제소 간 연결하는 원유운송관을 설치하고, 운송관의 가동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세 번째-석유부는 측정설비와 설비통제장치를 설치하고, 설비와 장치의 가동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7조

측정과 시찰과 정기적인 관리시설은 투자회사가 추천하여 석유부장관이 승인하고 권한을 부여한 제3의 기관이 관리한다.

제8조

첫 번째-회사는 석유부에서 수령한 원유와 정부정제소에서 생산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없다.

두 번째-원유정제활동의 투자를 관할하는 각 부처의 위원회는 투자회사가 계약조건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벌칙을 부과한다.

제9조

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라크자유구역에 설립된 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.

제10조

첫 번째-투자회사는 자유구역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지정하고 제품을 이라크 내에서 판매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.

두 번째-석유부는 이 조의 첫 번째 항에서 명시한 제품매입 시 우선권을 갖는다.

제11조

투자회사는 재정, 기술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석유부장관이 공포한 지침을 토대로 석유부가 마련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석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

첫 번째-투자회사는 투자구역에 국가재산이거나 각 행정구역이 소유한, 사업에 필요한 국가소유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. 또한 투자회사와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정한 계약에 따라 개인소유의 토지도 임차할 수 있다.

두 번째-재정부는 투자회사에 필요한 토지를 4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임대하여 주고 계약자쌍방이 합의한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, 상기 명시한 기간은 동기간 갱신이 가능하다. 이 경우 「1986년 제32차 국가재산매매 및 임대법」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세 번째-투자회사는 정제소사업과 그에 관련한 서비스 외 다른 목

적으로 임대 받은 토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네 번째-재정부는 투자회사가 사업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계약에 합의한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13조

투자회사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전력과 모든 물자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.

제14조

투자회사는 계약자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, 회사와 석유부 또는 각 부처 또는 관련회사 간 계약에 따라 (창고, 수출항, 송유관과 같은)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5조

투자회사는 산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

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제소제품에 대하여는 품질, 기준, 질적 관리조건을 명시한 법령과 지침을 적용한다.

제17조

첫 번째-석유부 내에는 "원유정제활동에 대한 투자위원회"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석유부, 재정부, 산업환경부, 전력부, 기획부, 개발협력부장관으로 구성하며, 각료회의와 연계하여 업무를 이행하고,

석유부에 본부를 둔다.

두 번째-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각 지역과 구역은 투자를 통하여 정제소를 설립하는 경우 이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.

세 번째-석유부장관은 석유부직원 중 1인을 위원회의 총 책임자로 임명한다.

네 번째-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각 지역과 구역은 제17조의 첫 번째 항에 명시한 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지역과 구역 내 정제소설립허가를 발급하거나 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8조

석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공포한다.

제19조

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일자(2008.2.18.)부터 시행한다.